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기간 연장 등〉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6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기간 연장 및 혁신금 융심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 마련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
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
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소
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ex: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하
지만 1년 6개월의 법령정비 기간은 법령 정비를 마치는 데 실제 소요
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아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
이 있음.

이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
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함(안 제10조의2제7항).
- 나.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기간 연장 및 혁신금융 심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 마련

☐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한 후 정비가 완료·시행되기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7항).

○ 또한,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민간위원) 중 호
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
도록 하고, 위원장의 업무 및 직무대행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 ⑥ (생략)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u>6개월</u>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u>6개월</u>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 ----- <u>1년</u> ----- -----. ----- ----- ----- ----- ----- <u>1년, 6개월</u>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 ⑥ (생략) <신설>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 구성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¹⁾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일정한 기간²⁾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받게 됨.

-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말 기준 총 35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그중 195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8월말	계
지정 건수	77건	58건	50건	52건	56건	62건	355건
출시 건수	24건	47건	39건	46건	15건	24건	195건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³⁾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가

1년 6개월(최초 6개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10의2⑦)

-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여부와 제4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중단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

인정되는 규제 개선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13조⁴⁾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제 개선의 요청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②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혁

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개선의 요청과 금융관련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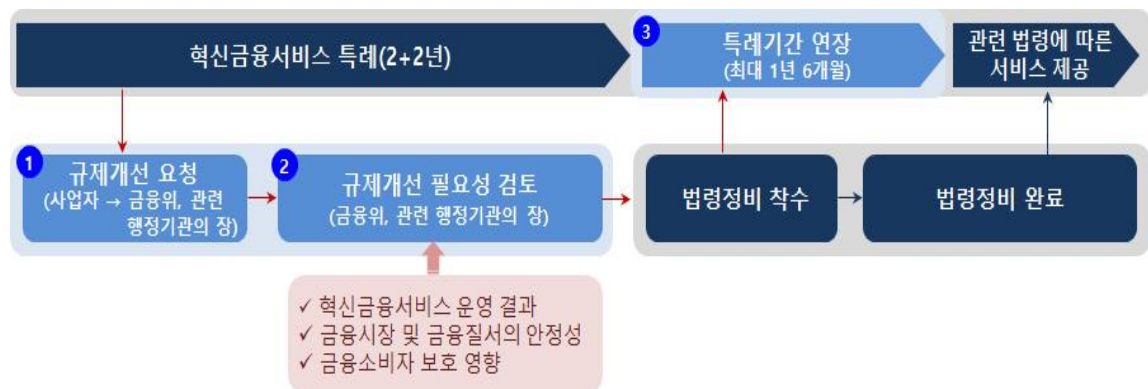
1. ~ 9. (생략)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정비에 착수하며, ③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법령정비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최초 6개월 부여, 6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을 초과할 수 없음.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은 실제 법령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 현행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심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법령 정비를 기대한 혁신금융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규제혁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10조의2제7항과 관련하여,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정비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법령 정비를 기대한 혁신금융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실제로 규제개선의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현황을 보면,⁵⁾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법령 정비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아울러 제384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당시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정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사례⁶⁾와 달리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5) [참고자료] 참조

6) 「산업융합 촉진법」 §10의6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0⑨, 「스마트도

규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선 요청 시 규제개선의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⁷⁾에만 법령정비에 착수하므로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기간 연장에 악용될 우려는 적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성·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규정된 위원장의 업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⁸⁾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 다만, 위원장을 복수로 두면서 복수 위원장 간 업무 소관 등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게 될 경우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효율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및 민간위원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단독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1② 등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②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8)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가 있음.⁹⁾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최대 1년 6개월의 법령정비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특히 법률 개정의 경우 법안 준비·국회 논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참고로, 현행법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중 건강기능식품위원회,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장을 1 명으로 하며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 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 각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참고자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규제개선의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현황

연번	사업자명	서비스 내용	지정기간	정비대상 법령	혁신금융 사업자의 요청일자	법령 정비 착수일자	\$10의2⑥에 따라 지정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간	제·개정 현황
1	빅밸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19.06.~'22.06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의2, 별표 18	'22.03.10.	'22.06.09.	'22.06.~'22.12.	완료
2	공감랩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	'19.06.~'22.06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의2, 별표 18	'22.03.10	'22.06.09.	'22.06.~'22.12.	완료
3	4차혁명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19.10.~'22.10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의2, 별표 18	'22.06.29.	'22.09.07.	'22.10.~'22.12.	완료
4	아이콘루프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9.06.~'22.12	비대명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22.09.30.	'22.12.21.	'23.01.~'23.06.	완료
5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19.04.~'23.04	은행법 \$27의2	'23.01.13.	'23.04.26.	'23.04.~'24.04.	완료
6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19.04.~'23.04	여전업법 \$2 5., \$19⑤1., \$19④	'23.01.13.	'23.04.26.	'23.04.~'24.10.	진행중
7	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19.05.~'23.05	여전업법 \$2, \$19⑦, \$27의4, 여전업법 시행령 \$9의9② 등	'23.02.13.	'23.04.26.	'23.05.~'24.11.	진행중
8	하나카드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19.10.~'23.10	여전업법 \$2 6. (전금법 제2조 제14호)	'23.06.21.	'23.07.19.	'22.10.~'24.04.	완료 (법령해석)
9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19.11.~'23.11	여전업법 \$2 5.가., \$18의3②, \$18의3③, \$19	'23.08.14.	'23.09.13.	'23.10.~'24.10.	진행중
10	카사코리아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19.12.~'23.12	자본시장법 \$110①, \$373, \$11	'23.08.14.	'23.12.13.	'23.12.~'24.12.	진행중
11	한국증권대차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19.12.~'23.12	자본시장법 \$11, \$40	'23.09.16.	'23.12.13.	'23.12.~'24.12.	진행중
12	네이버 파이낸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금융 신패일러도 사용가능한 후불결제 서비스	'21.02.~'24.02	전자금융거래법 \$28②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31 여신전문금융업법 \$2 2., \$3①	'23.10.20.	'23.11.15.	'24.02.~'24.08.	완료 '23.9.개정, '24.9.시행예정
13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20.02.~'24.02	금융실명법 \$3①, 금융실명법 시행령 \$4의2① (비대명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23.11.10.	'23.12.13.	'24.02.~'24.08.	완료 (법령해석)

연번	사업자명	서비스 내용	지정기간	정비대상 법령	혁신금융 사업자의 요청일자	법령 정비 착수일자	§10의2⑥에 따라 지정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간	제·개정 현황
14	두나무	비상장주식 안전 거래 플랫폼	'20.04~'24.03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	'23.12.27	'24.03.20.	'24.03.~'24.09.	진행중
15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안전 거래 플랫폼	'20.04~'24.03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	'23.12.27	'24.03.20.	'24.03.~'24.09.	진행중
16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21.05~'24.05	전자금융거래법 §28②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31 여신전문금융업법 §2 2., §3①	'24.02.22.	'24.04.03.	'24.04.~'24.10.	완료 '23.9.개정, '24.9.시행예정
17	비바리퍼블리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상품 구매시 결제부족분에 대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21.11~'24.11	전자금융거래법 §28②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31 여신전문금융업법 §2 2., §3①	'24.05.30.	'24.06.26.	'24.06.~'24.12.	완료 '23.9.개정, '24.9.시행예정